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 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

협회표준코드	펀드명	발생일자	비고
KR5210982231	신한BNPP프레스티지가치주증권투자신탁제2호[주식](종류C-i)	20160321	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[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대상]

해당사항 없음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